물질안전보건자료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KMK-722T

나. 제품의 권고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이형제

몰드이형제 EMC

이형제

사용상의 제한 산업용으로만 사용

다. 공급자정보

제조자

회사명 한국신에츠실리콘㈜

담당부문 업무부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 (서초동,지티타워15층)

전화번호 +82(0)2-590-2500 FAX번호 +82(0)2-590-2501

공급자

회사명 한국신에츠실리콘㈜

담당부문 업무부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 (서초동,지티타워15층)

전화번호 +82(0)2-590-2500 FAX번호 +82(0)2-590-2501 응급상황 +82(0)2-590-2500 이메일 msds@shinetsu.net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물리적 위험성
 인화성 액체
 구분 3

 건강 유해성
 급성 독성, 흡입
 구분 4

 피부 부식성/자극성
 구분 2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구분 2

 흡인 유해성
 구분 1

환경 유해성 분류되지 않음.

*이곳에 명시되지 않은 유해성은 "분류되지 않음", "적용되지 않음" 또는 "분류가 가능하지 않음"임.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o 그림문자



O 신호어 위험

o 유해·위험 문구

H226인화성 액체 및 증기.H332흡입하면 유해함.H315피부에 자극을 일으킴H319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04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o 예방조치 문구

예방

 P210
 열, 고온의 표면, 스파크, 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 금연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240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지하시오.

 P241
 폭발 방지용 전기·환기·조명 장비를 사용하시오.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시오.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P261
 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취급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1 / 8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71

대응

화재시:불을 끄기 위해 적절한 소화기구를 사용하시오. P370 + P378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잘을 받으시오. P301 + P310

토하게 하지 마시오. P331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또는 샤워하시오]. P303 + P361 + P353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 P302 + P352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32 + P313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04 + P340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2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P305 + P351 + P338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37 + P313

증상에 따라 처치를 하시오. P321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62 + P364

저장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P403 + P235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P405

폐기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P501 알려지지 않음.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 분진폭발 위험성):

보충정보 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 번호 | 식별번호 | 함유량(%) |
|-------------------------|----------|-------------|-----------------------|---------|
| _ 크실렌 관용명 및 이명 ; 디메틸 | | 1330-20-7 | KE-35427, 97-1-275 | 10 ~ 20 |
| 에틸벤젠 관용명 및 이명 ; 자료없음 | | 100-41-4 | KE-13532 | 3 ~ 10 |
| 폴리 에테르 화합물 관용명 및 이명 ; | 자료없음 | 166736-08-9 | 2003-3-2521 | 0.3 ~ 1 |

4. 응급조치 요령

즉시 다량의 물로 적어도 15분간 씻어낼 것. 용이하다면 콘텍트 렌즈를 뺄 것. 계속해서 씻어 낼 것. 자극이 발생하거나 지속될 가. 눈에 들어갔을 때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 비누와 물로 접촉 부위를 세척할 것.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복은 세척하시오.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필요한 경우 산소를 공급하거나 인공호흡을 실시할 다. 흡입했을 때

것. 피해자가 물질을 흡입한 경우에는 구강 대 구강법을 사용하지 말 것. 단방향 밸브나 다른 호흡 의료 장치가 달린 포켓

마스크를 사용하여 인공 호흡을 시킬 것.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입을 씻어낼 것. 토하게 하지 말 것. 환자가 토하는 경우, 구토물이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머리를 낮출 것. 흡인할 경우 폐부종과 라. 먹었을 때

폐렴을 일으킬 수 있음.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증상에 따라 처치하시오

일반적인 조치사항 의사에게 사용된 물질에 대해 알리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 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복은 세척하시오.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적절한 소화제 물 안개. 포말. 분말소화약제. 이산화탄소(CO2).

부적절한 소화제

열을 받거나 화재 발생시, 유해한 증기/가스를 형성할 수 있음.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예: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착용할 보호구 소방요원은 화염보호의,헬멧,보호장갑,고무장화,SCBA를 포함한 표준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시오. 화재 및 폭발 사고시 흄을 흡입하지 말 것. 위험없이 처리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 지역으로부터 옮길 것. 예방조치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필요없는 인원은 멀리 대피시킬 것. 누출정도가 심각해서 통제할 수 없다면, 관할기관에 보고해야 함. 누출된 물질을 만지거나 그 위로 지나가지 말 것.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환기할 것. 적합한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사항 및 보호구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면, 추가 누설 또는 누출을 방지할 것. 하수도, 수로 또는 지하로 방출시키지 말 것.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인근 지역에서 흡연, 섬광, 스파크나 화염 금지). 누출물로부터 가연성 물질(나무, 종이, 기름 등)을

걸리할 것.

대량 누출: 위험없이 할 수 있는 경우 누출물을 막을 것. 가능한 경우 누출된 물질 주위로 도랑을 팔 것.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시트로 덮을 것. 질석, 모래 또는 흙 등의 비가연성 물질로 제품을 흡수시킨 후, 후속처리를 위하여 용기에 수거할 것.

소량 누출: 흡착재질(예. 천, 플리스(fleece))로 닦아낼 것. 잔여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표면을 철저히 세척할 것.

절대로 엎질러 진 것을 다시 사용하려고 본래 용기에 넣지 말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제품을 취급할 때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반드시 접지되어야 함. 방폭 도구 및 방폭 장비를 사용할 것. 적절한 환기장치를

준비하시오. 취급/보관 시에 주의하십시오. 화염, 열원 또는 점화원 부근에서 취급, 저장 또는 개봉하지 말 것. 직사광선으로부터 물질을 보호할 것. 금연.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할 것. 적합한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미스트 또는 증기를 흡입하지 마시오. 피부 접촉을 피할 것. 눈에 접촉을 피할 것. 장기간 노출을 피할 것.

나. 안전한 저장 방법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열, 스파크 및 노출된 불꽃으로부터 멀리할 것.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용기를 단단히 밀폐할 것.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직사광선을 피한 차고 건조한 곳에 저장함. 양립할 수 없는 물질과 멀리하여 보관할 것 (본 MSDS의 10항을 참조). 응고를 피하기 위해 0도 이하에서 보관하지 마시오. 원래 용기에 담아서 보관할 것. 이 제품은 물을 함유하므로 금속용기에 장기간보관시에는 부식의 우려가 있음을 주의하시오.

8. 노출방지/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화학물질 | 및 | 물리적인자의 | 노출기준 |
|------|---|--------|------|
|------|---|--------|------|

| 구성성분 | 종류 | 값 | |
|--|---------------|-----------|--|
| 에틸벤젠 관용명 및 이명 ; 자료없음 (CAS 100-41-4) | STEL - 단기노출기준 | 545 mg/m3 | |
| | | 125 ppm | |
| | TWA | 435 mg/m3 | |
| | | 100 ppm | |
| 크실렌 관용명 및 이명 ; 디메틸 (CAS 1330-20-7) | STEL - 단기노출기준 | 655 mg/m3 | |
| | | 150 ppm | |
| | TWA | 435 mg/m3 | |
| | | 100 ppm | |
| ACGIH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 | | | |
| 구성성분 | 종류 | 값 | |
| 에틸벤젠 관용명 및 이명 ; 자료없음 (CAS 100-41-4) | TWA | 20 ppm | |
| 크실렌 관용명 및 이명 ; 디메틸 (CAS 1330-20-7) | STEL - 단기노출기준 | 150 ppm | |
| | TWA | 100 ppm | |

생물학적 노출기준

ACGIH 생물학적 노출기준

| 구성성분 | 값 | 결정 요인 | 표본 | 샘플링 시간 |
|---------------------------------------|------------|-------------------------|----------------|--------|
| 에틸벤젠 관용명 및 이명;자료입 (CAS 100-41-4) | 었음0.15 g/g | 만델산 및 페닐글리옥실산의 총합 | 소변 내의 크레아티닌 | * |
| 크실렌 관용명 및 이명 ; 디메틸 (CAS 1330-20-7) | 1.5 g/g | 메틸마뇨산 | 소변 내의 크레아티닌 | * |

* - 견본의 자세한 내용은 출처자료를 참고할 것.

노출 지침 기타 성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방폭 처리된 전체 및 국소배기장치. 세안장치 시설을 제공할 것.

다. 개인 보호구

o 호흡기 보호 작업자들이 노출 한계 이상의 농도에서 일할 경우에는 허가된 호흡기를 사용해야 함.

O 눈 보호 측면 보호면을 갖춘 보안경(또는 고글)을 착용 할 것.

 O 손 보호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을 착용 할 것.

O 신체 보호 적절한 보호복을 착용 할 것.

위생대책 피부 접촉을 피할 것. 눈에 접촉을 피할 것. 휴식 시간 전이나 본 제품을 취급한 다음에는 즉시 손을 씻으십시오. 우수한

산업위생 및 안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취급할 것.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물리적 상태, 색 등)

 형태
 액체.

 색
 유백색

3 / 8

나. 냄새 용제냄새 다. 냄새 역치 자료없음 자료없음 라. pH

마. 녹는점/어는점

0°C(32°F)[물] 녹는점 100°C(212°F)[물]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31 ° C (87.8 ° F) 밀폐식 시험 방법 사. 인화점

아. 증발 속도 < 1 (부틸 아세테이트=1)

자. 인화성(고체, 기체) 해당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하한 1.0 %v/v [크실렌] 7.0 %v/v [크실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

자료없음 폭발 한계 - 하한 (%) 폭발 한계 - 상한 (%) 자료없음

0.86 kPa (25°C) [크실렌] 카. 증기압

타. 용해도

용해도(물) 분산

3.7 (공기=1.0) [크실렌] 파. 증기밀도

하. 비중 0.96 (25°C) 해당없음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너. 자연발화 온도 자료없음 자료없음 더. 분해 온도

27 mPa·s (25°C) 러. 점도

해당없음 머. 분자량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정상 상태에서는 안정함. 화학적 안정성

위험한 중합반응이 발생하지 않음. 유해 반응의 가능성

나. 피해야 할 조건 (정전기 방전, 자료없음

충격, 진동 등)

다. 피해야 할 물질 강산하제

가열 또는 연소에 의해 분해생성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이산화탄소와 불완전 연소에 따라 미량의 탄소화합물을 생성함: 이산화규소. 포름알데히드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o 호흡기 흡입하면 유해함.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o 피부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0 눈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o 경구

나. 건강 유해성 정보

o 급성 독성 (노출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구성성분 좆 시험 결과

에틸벤젠 관용명 및 이명; 자료없음(CAS 100-41-4)

<u>급성</u>

경구

LD50 3500 mg/kg 쥐

경피

LD50 17800 mg/kg 토끼

제품명: KMK-722T 5 / 8

시험 결과 구성성분 종 크실렌 관용명 및 이명 : 디메틸 (CAS 1330-20-7) 급성 경구

LD50 3523 - 8600 mg/kg쥐 1590 mg/kg

쥐 (Mouse)

경피 LD50 토끼 >43 g/kg

흡입

LC50 쥐 6350 ppm, 4 시간 쥐 (Mouse) 3907 ppm, 6 시간

폴리 에테르 화합물 관용명 및 이명; 자료없음(CAS 166736-08-9)

<u>급성</u> 경구

LD50 쥐 500 - 2000 mg/kg (Reference value)

o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크실렌]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폴리 에테르 화합물] o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o 호흡기 과민성 자료없음. o 피부 과민성 자료없음.

o 발암성

IARC 단행본. 발암성에 관한 총평

에틸벤젠 관용명 및 이명; 자료없음(CAS 100-41-4) 2B 인체 발암성 가능 물질 크실렌 관용명 및 이명 ; 디메틸 (CAS 1330-20-7) 3 인체 발암성으로 분류되지 않음.

o 생식세포 변이원성 자료없음. 자료없음. o 생식 독성 자료없음. o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다음 장기에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피해을 일으킬 수 있음. o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청각 기 [에틸벤젠]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크실렌] [에틸벤젠] o 흡인 유해성

다. 기타 정보 다른 구성 요소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 제품 제품 | | 종 | 시험 결과 |
|--------------------|-----------------|--|--|
| KMK-722T | | | |
| 수생 | | | |
| 갑각류 | EC50 | 물벼룩 | 100.3125 mg/l, 48 시간 추정됨 |
| 구성성분 | | 종 | 시험 결과 |
| 에틸벤젠 관용명 및 이명 ; 자료 | 로없음 (CAS 100-41 | -4) | |
| 수생 | | | |
| 갑각류 | EC50 | 물벼룩(학명 다프니아 마그나) | 1.37 - 4.4 mg/l, 48 시간 |
| 어류 | LC50 | Atlantic silverside (Menidia menidia) | 5.1 mg/l, 96 시간 |
| 크실렌 관용명 및 이명 ; 디메틸 | (CAS 1330-20-7 | ') | |
| 수생 | | | |
| 어류 | LC50 | 무지개송어,donaldson trout (Oncorhynchus mykiss) | 6.702 - 10.032 mg/l, 96 시간 |
| 폴리 에테르 화합물 관용명 및 | 이명 ; 자료없음 (CAS | S 166736-08-9) | |
| 수생 | | | |
| 갑각류 | EC50 | 물벼룩(학명 다프니아 마그나) | 1 - 10 mg/l, 48 시간 (Reference value) |
| 어류 | LC50 | Zebra danio (Danio rerio) | 10 - 100 mg/l, 96 시간 (Reference value) |
| 조류 | EC50 | 조류 | 10 - 100 mg/l, 72 시간 (Reference value) |
| 수생환경 유해성, 급성 | 수생생물에 유 | 유독함. [크실렌] [에틸벤젠] [폴리 에테르 화합물] | |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 유해함. [에틸벤젠]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생분해성

퍼센트 분해도 (호기성 생분해-즉시)

폴리 에테르 화합물 관용명 및 이명; 자료없음 > 90 % OECD 303A 결과: 이분해성

다. 생물 농축성 자료없음. 라. 토양 이동성 자료없음

바. 기타 유해 영향 다른 구성 요소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소각처리. 소각시 실리카분말이 생성하므로 적절한 설비에서 소각하시오.또 필요한방진마스크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된 폐기물 처리업체에 연락할 것. 관련 지방/지역/국가/국제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빈 용기에 제품잔여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용기를 비운 후에도 제품표지의 경고사항을 따를 것.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 사용자, 생산자, 폐기물 처리업체가 협의하여 폐기물 코드를 부여해야 함.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IATA

UN1866 가. 유엔번호 나. 유엔 적정 선적명 레진 용액 인화성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3 위해 등급 부수적 위험 III 라. 용기등급 아니오. 마. 환경유해성 3L ERG 코드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여객기 및 화물기 제한적으로 허용됨. 제한적으로 허용됨. 항공 화물 전용

국제해상위험물 (IMDG)

UN1866 가. 유엔번호 나. 유엔 적정 선적명 레진 용액 인화성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위해 등급 3 부수적 위험 라. 용기등급 III

마. 환경유해성

해양오염물질 아니오. F-E, s-E **EmS**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본제품은 포장없이 그대로 실어 수송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취급 전에 안전 지침, MSDS 및 응급절차를 숙지할 것.

취급 전에 안전 지침, MSDS 및 응급절차를 숙지할 것.

MARPOL 73/78 부록 II 및 IBC 코드에 따른 벌크 상태 운송

IATA; 국제해상위험물 (IMDG)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6 / 8

허가대상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관리대상 유해물질

에틸벤젠 관용명 및 이명; 자료없음 (CAS 100-41-4) 크실렌 관용명 및 이명; 디메틸 (CAS 1330-20-7)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에틸벤젠 관용명 및 이명; 자료없음 (CAS 100-41-4) 크실렌 관용명 및 이명; 디메틸 (CAS 1330-20-7)

작업환경 측정대상물질

에틸벤젠 관용명 및 이명; 자료없음 (CAS 100-41-4) 크실렌 관용명 및 이명; 디메틸 (CAS 1330-20-7)

노출기준설정물질

에틸벤젠 관용명 및 이명; 자료없음 (CAS 100-41-4) 크실렌 관용명 및 이명; 디메틸 (CAS 1330-20-7)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사고대비물질

규제되지 않음.

금지물질

규제되지 않음.

관찰물질 (폐지)

규제되지 않음.

제한물질

규제되지 않음.

유독물질

규제되지 않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제4류 제2석유류 (수용성액체) 위험등급 III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폐유기용제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

규제되지 않음.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유해물질

에틸벤젠 관용명 및 이명; 자료없음(CAS 100-41-4) 크실렌 관용명 및 이명; 디메틸(CAS 1330-20-7)

특정대기유해물질

에틸벤젠 관용명 및 이명; 자료없음(CAS 100-41-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PEC) (환경부 고시 제2015-92)

크실렌 관용명 및 이명 ; 디메틸 (CAS 1330-20-7)

목록명

추가 정보

이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목록현황

국가 혹은 지역

목록 등재 (예/아니오)

한국

한국 기존화학물질 목록(ECL)

*"예"는 본 제품의 모든 성분들이 해당 국가(들) 의 목록에 관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냄 "아니오"는 본 제품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성분이 해당 국가의 목록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음을 나타냄.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ACGIH

EPA: 데이터베이스 확보 NLM: 유해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US. IARC 화학물질인자의 노출기준 모노그래프 대한민국.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관리법) 대한민국. 위험물 및 지정수량 (위험물안전관리법) 대한민국.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법)

대한민국. 허가 대상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법)

대한민국,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금지물질 (화학물질관리법)

대한민국. 금지물질 (화학물질관리법) 대한민국. 휘발성유기화합물 (환경부) 대한민국. 제한물질 (화학물질관리법)

대한민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AREC), 기존화학물질목록 (KECI)

대한민국. 유독물질 (화학물질관리법)

대한민국.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관한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대한민국, 관리대상물질 (산업안전보건법) 대한민국, 특별관리물질 (산업안전보건법)

대한민국.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대한민국.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나. 최초 작성일자 2017년 11월 30일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2022년 6월 7일 (04 개정)

라. 기타 자료없음

책임의 한계 기재내용은 대표치이고,규격 및 보증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또한 추천된 산업안전보건조치나 취급방법은 통상의

취급사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용도,취급조건은 추천하는 사항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일반공업용도로 개발,제조 된 제품입니다.의료용 기타 특수용도에 사용하시고자 할 때는 귀사에서 사전

데스트하여,해당용도에 사용하는 것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사용 하십시요.의료용IMPLANT용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요.

개정 정보 성분의 구성 및 정보: 성분

물리 및 화학적 특성: 다중 특성 법적 규제현황: 법적 규제현황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

확인필

| 제 공 자 | 상호(명칭) | 한국신에츠실리콘(주) | 사업자등록번호 | 104-81-20501 | |
|-----------------------|---|---|-----------------|--|--|
| | 성명(대표자) | YAGI MASAO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MSDS담당자(02-590-2530) (전자우편:msds@shinetsu.net) | |
| | 소재지(사업장)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 (서초동)(전화번호: 02-590-2500 GT타워 15층 (팩스번호: 02-590-2506 | | | |
| | 화학물질명(총칭명) | Xylene (해당 화학물질은 | 제품 내 혼합물? | <u>일로 존재함</u>) | |
| 등록 (※ 등록 물 물질의 | 고유번호(CAS No. 등) | 1330-20-7 | 상품명 | MSDS 참조 (붙힘) | |
| | 등록번호·신고번호 (※ 등록되지 않은 유해화학 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 | 제 04-1808-00399호 | 용도 | 48.용제(Solvents) | |
| 질 | | [√] 유독물질 [] 허기 | ·물질 []제 t | 한물질 []금지물질 | |
| 정 보 유해화학물질 등 여부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 | | |
| | | 환경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화학물질 | | | |
| | 유해화학물질 등 여부 | [√] 물리적 위험성, [√] 건강 유해성, []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 | | |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별표 7에 따라 분류되는 | | | |
| | | 화학물질 | | | |

※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자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 구분 | | 기술내용 | |
|--------|--|--------------------------|-------------------------------|--|
| | 용도기술 (공급망내 확인된 용도) | | 48.용제(Solvents)(접착방지제 등 의 용제) | |
| | | 사용시간 및 빈도 | 자료없음 | |
| 위 | 제조공정 기술 (작업조건) | 단위시간 또는 작업당 사용량 | 자료없음 | |
| 해 성 | | 해당 용도에 대한 기타 작업조건 | 자료없음 | |
| 정 보 | 위해성저감조치 | 인체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 자료없음 | |
| | | 환경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 자료없음 | |
| | | 폐기물 관리조치 | 자료없음 | |
| | 노출정보 및 하 위사용자 지침 | 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노출량 | 자료없음 | |
| | 210mm × 207mm [HIALTI/00g/ 3] [F \ \ \ \ \ \ \ \ \ \ \ \ \ \ \ \ \ \ | | | |